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모자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4. 판매 회사 : 금융투자협회([kofia.or.kr](http://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ubs-hana.com](http://ubs-hana.com)) 홈페이지 참조
5. 작성 기준일 : 2015년 08월 31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5년 10월 29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http://kofia.or.kr)  
서면문서 :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적정 위험을 부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하나UBS 태극유망중 소형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우량 중소형주식 등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을 추구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전략

####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전략
하나UBS 태극유 망중소형 증권모 투자신탁[주식]	9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운용원칙<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소형주식중 투자지표에 의해 저평가된 가치주,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성장주 및 안정적 주가흐름이 기대되는 배당관련 주식에 집중투자</li></ul></li><li>■ 자산운용의 기본방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ottom-up Approach(기업분석-&gt;산업분석-&gt;경제분석)의 예 의한 종목발굴 : 산업조사 및 기업실적 점검</li><li>- 중장기 성과 지향<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추가가 기업가치를 반영할 때까지 장기 보유전략</li><li>• 산업 및 기업실적 점검을 통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li><li>• 철저한 펀더멘털에 의한 투자성과는 중장기 투자에 적합</li></ul></li></ul></li></ul>

\*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합니다.

\* 모신탁에의 투자비율은 가격변동으로 인한 편입비율 조정 이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투자비율을 조정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2) 비교지수 : (코스피대형주\*10%)+[(코스피중형주\*80%)+(코스피소형주\*20%)]\*80%+(코스닥 100\*1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소형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코스피대형주\*10%)+[(코스피중형주\*80%)+(코스피소형주\*20%)]\*80%+(코스닥 100\*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 (3)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이하 '투자원리금')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 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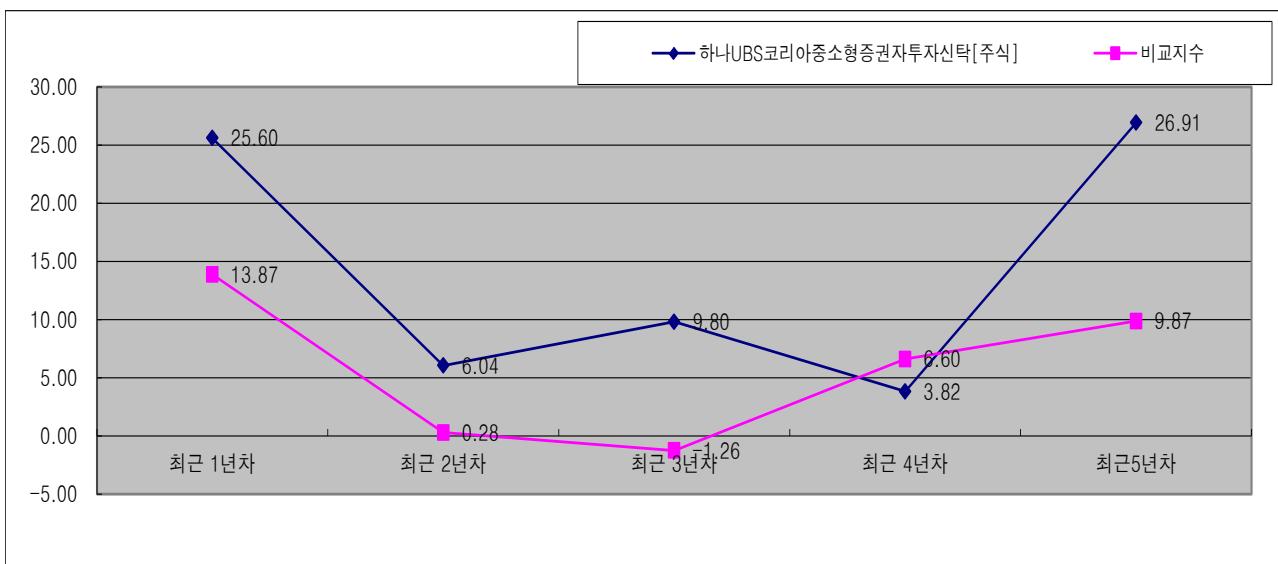
## 5. 운용전문인력(2015.08.3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김현지	1981	차장	16개	2,68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런던 정경대학교</li> <li>- 애널리스트 6년</li> <li>-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 운용본부</li> </ul>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 6. 투자실적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기준일 : 2015년 3월 17일,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14/03/18~2015/03/17	2013/03/18~2014/03/17	2012/03/18~2013/03/17	2011/03/18~2012/03/17	2010/03/18~2011/03/17
JBS코리아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	2007-09-18	25.60	6.04	9.80	3.82	26.91
비교지수	2007-09-18	13.87	0.28	-1.26	6.60	9.87
ClassA	2007-09-20	25.67	6.12	9.89	3.93	27.20
ClassAU	2013-03-25	25.55				
ClassC1	2007-09-18	9.53	-0.09	-5.76	3.06	-3.07
ClassCF	2007-10-01	26.51	6.85	10.63	4.65	28.04
ClassCE	2007-11-20	25.31	5.75	9.43	3.38	26.44
ClassC2	2012-03-08		-9.35	9.16		
ClassC3	2013-03-08	17.76	5.56			
ClassC4	2014-03-10	0.86				
ClassW	2014-10-01					

##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 시기
	종류 A, A-U	종류 A-E	종류 C1, C2, C3, C4, C5, C-F, C-E, W	종류 S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이내 <sup>(주)</sup>	납입금액의 0.5%이내 <sup>(주)</sup>	없음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이내(종류 A-E 는 0.5% 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A	A-U	A-E	C1	C2	C3	
집합투자업자보수	0.7326	0.7326	0.7326	0.7326	0.7326	0.7326	
판매회사보수	0.7094	0.8094	0.3547	1.5000	1.3750	1.2500	
신탁업자보수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0.0180	<u>0.0180</u>	0.0180	0.0180	0.0180	
보수합계	1.5000	1.6000	<u>1.1453</u>	2.2906	2.1656	2.0406	사유 발생시
기타비용주1)	0.0022	0.0022	—	0.0000	0.0000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및비용	1.5022	1.6022	<u>1.1453</u>	2.2906	2.1656	2.0406	
증권거래비용주3)	0.4312	0.4221	—	0.4438	0.0000	0.4295	사유 발생시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C4	C5	C-F	C-E	S	W	
집합투자업자보수	0.7326	0.7326	0.7326	0.7326	0.7326	0.7326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1250	1.0000	0.0300	<u>0.5000</u>	0.3500	0.0000	
신탁업자보수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0.0180	0.0180	0.0180	0.0180	0.0180	
보수합계	1.9156	1.7906	0.8206	1.2906	1.1406	0.7906	사유 발생시
기타비용주1)	0.0000	—	0.0000	0.0019	—	—	사유 발생시
총보수및비용	1.9156	1.5022	1.6022	1.2925	2.1656	2.0406	
증권거래비용주3)	0.1964	0.4312	0.4221	0.4438	0.0000	0.4295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반기회계년도 2015.3.17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반기회계년도 2015.3.17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단위: 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252,172	579,723	940,847	2,014,005
종류 A-U	166,775	418,134	695,257	1,518,787
종류 A-E	163,985	517,434	907,112	2,065,121
종류 C1	234,756	740,067	1,297,173	2,952,731
종류 C-F	84,100	265,127	464,708	1,057,806
종류 C-E	132,269	416,978	730,870	1,663,667

종류 S	116,896	368,515	645,925	1,470,307
종류 W	81,026	255,434	447,719	1,019,13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S 수익증권은 10년동안 투자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 2. 과세

###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주민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라.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 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 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ubs-hana.com">www.ubs-hana.com</a> ),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 나. 매입 및 환매절차

#### (1) 매입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A-U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신탁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
종류 A-E	<u>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u>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투자자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투자자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투자자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투자자
종류 C-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기구</li> <li>•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li> <li>• 100 억원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인 경우</li> </ul>
종류 C-E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종류 W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특정금전신탁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오후 3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 오후 3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T+2일
자금납입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적용일)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 (2) 환매

####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오후 3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1일	T+3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오후 3 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2일	T+3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4. 전환 - 업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 (1)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A-U)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판매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

펀드명	종류	선취판매수수료	판매보수	총보수	전환
하나 UBS 업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 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0.8000	1.7526	
하나 UBS 업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K-1 호)[주식-파생형]	A-U	1.0 이내	0.8000	1.7526	
하나 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0.8094	1.6000	
하나 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0.8000	1.5480	
하나 UBS IT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A-U	1.0 이내	0.8374	1.6400	
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U	1.0 이내	0.8000	1.5480	
하나 UBS 파워 1.5 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A-U	1.0 이내	0.3400	0.9480	
하나 UBS 신종 MMF(S-51 호)(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A-U	1.0 이내	0.5874	0.9500	
하나 UBS 신종 MMF(S-29 호)(수익자가 법인 등 개인이 아닌 경우)	A-U	1.0 이내	0.0784	0.1320	



##### (2) 전환 절차 및 방법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① 하나UBS 업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하나UBS 업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



**신탁(K-1호)[주식-파생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영업일
15시 이전 <sup>주1)</sup>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15시 경과후 <sup>주1)</sup>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주1) 다만,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② **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T+3일	영업일
15시 이전 <sup>주1)</sup>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15시 경과후 <sup>주1)</sup>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주1) 다만,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③ **하나UBS 신종MMF(S-51호)**, **하나UBS 신종MMF(S-2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영업일
17시 이전 <sup>주1)</sup>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후 <sup>주1)</sup>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전환일	

주1) 다만, **하나UBS 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2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 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④ **하나UBS파워1.5배 레버리지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3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전환청구	T일	T+1일	T+2일	T+3일	영업일
13시 이전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13시 경과후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 (3) 전환시 유의사항

-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규약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규약 제 40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신탁 전환시 및 전환후 수익자가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III.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 8 기(반기)	제 7 기	제 6 기
	2015.03.17	2014.09.17	2013.09.17
운용자산	3,071,535,014	2,643,170,892	4,418,447,438
유가증권	3,041,002,750	2,617,076,127	4,374,071,378
현금 및 예치금	30,532,264	26,094,765	23,376,060
기타 운용자산	0	0	21,000,000
기타자산	16,587,955	93,013,882	69,533,037
자산총계	3,088,122,969	2,736,184,774	4,487,980,475
기타부채	4,793,632	695,102,764	566,793,773
부채총계	4,793,632	695,102,764	566,793,773
원본	2,945,382,985	2,041,082,010	3,921,186,702
이익조정금	137,946,352	0	0
자본총계	3,083,329,337	2,041,082,010	3,921,186,702
운용수익	157,253,393	811,288,032	293,354,625
이자수익	282,123	766,861	920,014
매매/평가차익(손)	155,935,539	809,663,440	290,849,098
기타수익	1,035,731	857,731	1,585,513
운용비용	1,225	3,742	62,937
매매수수료	1,225	3,742	6,437
기타비용	0	0	56,500
당기순이익	157,252,168	811,284,290	293,291,688